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8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김윤덕·임오경·신영대

최민희 • 문진석 • 강유정

이원택 • 이연희 • 이건태

홍기원 · 김교흥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제45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및 제95조).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2호 중 영화 상영관 경영자가 제2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나이 확인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2호 및 제5호 중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제53조제2항, 제62조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5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의"를 "제53조제4항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및 제6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및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조제5항, 제53조제2항, 제62조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④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⑤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			
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			
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u>o</u>]		
<후단 신설>	경우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		
	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		
	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		
	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u>한다.</u>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	및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 ③ (생 략)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 의 금지)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략)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후단

<u>하고</u> ,
제2호 중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
서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
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
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정처부의 면제학 수 있

- 1. ~ 8.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다.

- 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준수사항) -----

신설>

1. ~ 5. (생 략) 제67조(행정처분 등) ① (생 략) 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나이 확인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 후단을 준용한다.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3	과 같음)	
제67조(행정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고, 제2호 및 제5호 중 비 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제53조 제2항, 제62조제2호 또는 제4호 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 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	7. <u>제53조제4항의</u>
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	
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 12. (현행과 같음)

8. ~ 12. (생 략)